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1. 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제22조의3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상향, 지급절차 개선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 신고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불공정 행위 유형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안 별표1)
- 나. 신고자에게 해당 처분결과와 포상금 신청 안내를 동시에 받을수 있도록 행정안내절차 개선(안 제6조)
- 다. 법률상에 처분 근거가 없는 신고라도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절차 신설(안 제8조)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공정건설추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 전자우편 : mjklldh@korea.kr
- 팩 스 : 044-201-3497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전화 044-201-349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